벤처기업 건전화 방안

- **(주요 내용) 벤처기업 확인제 개선과 민간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「벤처기업 건전화방안」이 2월 28일 「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」을 통해 확정됨**
  - 「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」은 2007년까지, 벤처기업 확인은 2005년까지 운용하고, 벤처 확인 기준을 혁신 능력과 기술력 위주로 개편(벤처투자기업은 1년간 유효)
  - (민간의 자율 규제 강화) 벤처기업의 평가(평가 실명제), 사후 관리(벤처 확인 철회 건의 포함) 등에 대해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 부문의 기능을 강화
  - (정부의 인프라 확충)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간접 지원에 중점에 중점을 두는 한편, 해외 시장 진출 및 M&A 활성화 기반 구축
  - (금융감독 기능 강화) 코스닥 시장 등록 요건 및 퇴출 기준 강화로 주식 시장을 건전화하는 한편, 해외 증권 발행에 대한 감독과 등록 예정 기업의 관리 등을 강화

- **(배경과 의미) 벤처기업을 둘러싼 비리의 재발을 막고 연구 개발 중심의 벤처기업 발전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**
  - 1998년 마련된 「벤처기업확인제도」가 벤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양적 성장 위주로 운영되었고,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비리의 원인으로 작용
  - 기술력이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해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, 그리고 민간 부문의 자율성 강화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방향성은 긍정적임

- **(문제점) 벤처기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 여부, 벤처 투자의 위축 가능성, 그리고 정부 부처간 정책 중복 문제 등은 우려의 대상임**
  - 기술력 등을 포함한 혁신 능력을 벤처 기업 확인의 핵심 항목으로 삼고 있으나, 기술 평가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미흡
  - 벤처캐피털회사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벤처 투자 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
  - 정부 부처간 벤처 육성책 중복 문제에 대한 조정 방안이 없고, 비영리 민간 단체가 벤처기업 확인 철회를 건의하는 권리를 갖는 점에 대한 우려도 있음

박병칠 연구위원 bcpark@hri.co.kr ☎ (031) 288-7339

최근 주요 정책(2002. 2. 26 ~ 3. 4)

소기업형 e-Business 모델 개발	중소기업청 (2.26)	- 비제조업종 소기업이 업종별 특화된 e-Business모델을 활용하여 off-line 기반을 바탕으로 on-line상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진 · 이를 위해 4개 시범 업종 단체 컨소시엄을 선정 · 선정된 4개 업종별 단체 컨소시엄 당 최대 5억원 이내로 e-Business 모델 개발 및 교육비를 지원 ·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와 공동으로 소기업의 참여를 제고하고 타업종으로 자발적인 확산을 유도 - 개발되는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는 소기업에 적합한 ASP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 - e-Business모델 개발은 8월까지 완료하고 업종당 500업체를 대상으로 업무프로세스 개선, 정보화 마인드 제고, 소기업의 e-Business 추진 전략 및 활용 방법을 교육시켜 나갈 계획임
「벤처기업 건전화 방안」	중소기업청 (2.28)	- (기본 방향) 정부의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 형태로 전환하고 인프라 확충 정책에 주력 -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개편하고 적용 기간을 단축 · '혁신 능력'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유형별 조건을 충족하는 2단계 평가체제 도입 · 민간 평가기관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평가의 책임도 강화 - 불법 · 부당 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 취소를 제도화 - 벤처기업간 M&A 활성화
부품 · 소재 산업의 수출 및 투자 유치 활성화	산업자원부 (3.2)	- 2001년의 부품 · 소재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에 이어 2002년에는 차세대 핵심 부품 · 소재의 기술 개발에 역점 - 오는 11월 중 「제 1회 한국 부품 · 소재 종합전시회」 개최 - 미국(5월) · 독일(9월) 지역에 「부품 · 소재투자유치단」 파견 - 북경, 상해, 광동성을 대상으로 「부품 · 소재중국시장개척단」을 파견할 예정(3/4분기) - 부품 · 소재 수출 Leading Company 50개사를 오는 11월 중에 선정
금융소비자 교육 강화	금융감독위원회 (3.4)	- 일반인들의 금융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 - 우선 교사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- (교육 내용) 금융 관련 제도, 분쟁 조정 사례 및 예방 대책, 각종 구제 조치 등